

『 2023년도 기술닥터 프로그램 참여기업』 지원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닥터(기술·경영 분야 전문가)를 통해 기업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오니 기술애로 해결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의 현장중심 맞춤형 1:1 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북도내 **제조기반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기술심화 및 기술지도와 관련된 경영일반
- **지원규모** | 33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지원분야에 따라 **최대 160만원** * 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 매칭 기술닥터 1차 미팅 후 4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기술·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전문가) 1:1 맞춤형 자문

※ 지원 분야, 규모, 한도, 기간 등은 신청현황 및 내부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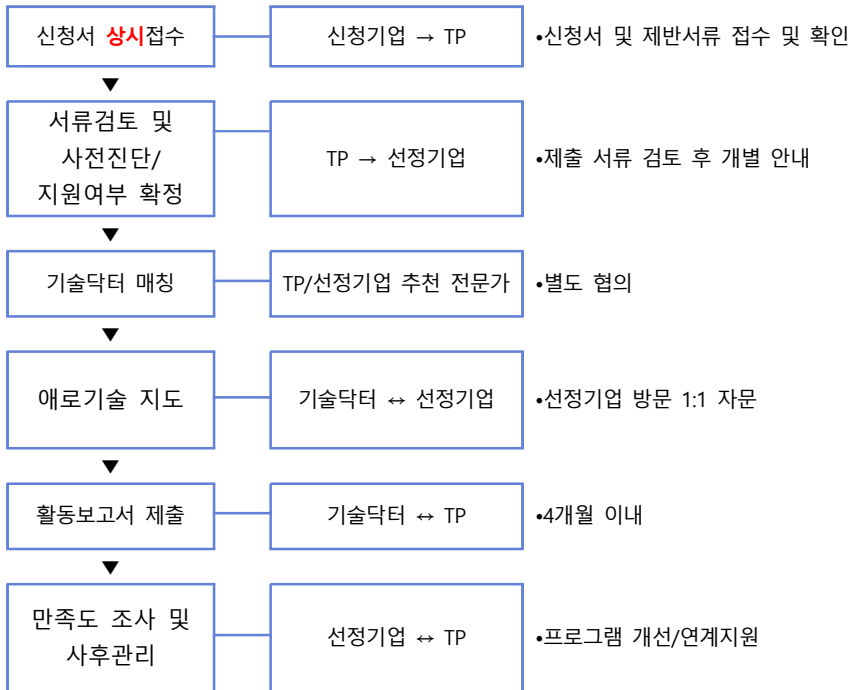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기반 중소기업
- **항목별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세부항목	지원한도
기술 심화	◦ 기술개발, 생산공정혁신, 품질/성능 안정 등 애로기술 전반	160만원 이내
경영 일반	◦ 사업화 :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수출 판로확보, 신제품 개발 등	80만원 이내
	◦ 경영전반 : 경영전략 수립, 지식재산권, 법률, 노무, 재무회계, 투자 등	

○ 지원방식

구분	세부내용
자문위원	기술닥터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자문 실시 (신청기업에 예산 직접지원 x)
지원횟수	신청기업-기술닥터 협의를 통해 지원한도 내 자율수행
지원기간	신청기업-기술닥터 1차 미팅 후 4개월 이내 ※ 단, 2023.12.15.까지 활동보고서 제출분에 한해서 지원함
매칭방법	① 전북TP 기술닥터 Pool활용 추천 전문가 ② 신청기업이 원하는 전문가* * ② 번의 경우 전북TP에서 정한 별도의 기술닥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에 한함. (붙임의 기술닥터 자격요건 참고)

3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선정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공고 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12월 29일(금), 17:00까지
 - 접수 기간 : 공고기간 내 상시접수
 -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 방법 : Email신청(meekim@jbtp.or.kr)
-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 담당자 : 김미의 선임연구원 (meekim@jbtp.or.kr) / 063-219-2125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정 서식	• [서식 1] 기술닥터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PDF/HWP
	• [서식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활용에 관한 동의서	PDF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일괄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PDF)로 정리하여 제출
- ※ [서식 1] 지원 신청서는 PDF파일과 함께 HWP파일 별도 제출
-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5 주의사항

- 신청서류 제출 후 필요시 유선확인을 요망하며, 별도 확인이 없는 미접수 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지원여부는 신청기업 개별 통보)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기술닥터 매칭 후 후 일정기간(1개월) 내 특별한 사유 없이 1차 미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애로기술 상황에 따라 매칭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음
-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수출, 고용 등) 등의 자료 요청 시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

연번	자격요건
1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지원 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또는 대학 부(조)교수, 산학협력 담당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주관기관의 심의를 통해 기술력이 인정된 퇴직기술 전문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기관 등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대학(교)에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산업체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담당 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관련 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산업분야 10년 이상 경력 자로서 주관기관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된 자
4	기술지도사 및 경영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
5	주관기관의 심의를 통해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